#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46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진선미・이학영・임오경

최기상 · 김영호 · 문정복

이기헌・조승래・강경숙

정준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,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, 현장실습 시설·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.

현재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'선도기업'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,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·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,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,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

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) ① 교육부장관 및 시·도교육 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,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,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개 정 안 제8조의2(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) ① 교육부장관 및 시・ 도교육감은 「초・중등교육 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 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 환경 의 안전성,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,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우수 현장실 습산업체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